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

발의연월일: 2020. 6. 11.

발 의 자:김민기·강선우·조오섭

양경숙 · 김철민 · 송기헌

안민석 · 김병욱 · 김주영

강병원 · 홍성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 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.

그러나 현재 금연구역의 범위가 좁아 어린이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"10미터"를 각각 "30미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	6
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흡연으	
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	
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	
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	
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을	
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	
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	
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	
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
1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	1
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	<u>30</u>
<u>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	미터
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	
역을 말한다)	
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	2
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	
터 <u>10미터</u> 이내의 구역(일반	<u>30미터</u>
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	
된 구역을 말한다)	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